

의안 번호	17010
----------	-------

비 용 추 계 서	법안비용추계2과 2015-321
의 회 인 : 김 윤 덕 의원 접 수 일 : 2015년 8월 21일 회 답 일 : 2015년 8월 24일	담 당 : 장 태 성 과 장 정 용 제 분석관 내용문의 : (02)788-464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첨부사유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개정안 제12조의2 제1항은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탁경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안 제13조의3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¹⁾에 참여하는 시·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3. 미첨부 사유

가. 안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위탁사업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과 관련된 대상·범위·방법 등을 현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탁

1) 안 제13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경비는 위탁범위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근거하여 소요경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안 제13조의3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선도사업²⁾에 참여하는 시·도, 위탁사업자, 사업대행자 등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대상·범위·방법 등을 현실점에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추계에 한계가 있다.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2과

과 장 장 태 성

예산분석관 정 용 제

(02-788-4645, jung28@assembly.go.kr)

2) 안 제13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